

# 한국간호과학회 연구윤리 규정

2006. 10. 02 제정  
2010. 06. 17 개정  
2012. 08. 31 개정  
2013. 07. 12 개정  
2017. 02. 16 개정  
2022. 07. 08 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간호과학회(이하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확립
2.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수행과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출판에 있어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 제시
3.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절차 및 기준제시
4. 연구윤리위원회 세칙 제시

##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JKAN, ANR)에 논문 투고(게재)와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를 포함한 제반 연구행위에 참여하는 본 학회 회원 및 비회원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

**제3조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수행, 연구 결과의 출판·발표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 밖에 간호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 (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 제5조 (연구대상자의 보호)

-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에서 연구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험과정은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 (연구비)

1. 연구자는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연구자는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 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 제3장 출판 및 발표

제7조 (출판) 학술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이어야 하고, 출판 진실성과 관련하여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저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자는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 지식의 확산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저자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국제 의편집, ICMJE, 2019)의 저자 자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본 학회지 투고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3. 저자는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

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와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③ 편집위원(회)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배경이나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하고,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편집위원(회)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학술발표)**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의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정기 학술지로 출판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지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제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① 본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연구윤리위반 제보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직접조사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 학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기관에 이관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연구자의 소속기관이 없는(폐교 등의 이유) 등의 이유로 자체 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피조사자나 제보자가 해당 기관의 판정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연구 부정 행위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예비조사나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사무국은 학회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해당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알린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와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지를 조사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예비조사 결과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11조(조사위원회)

-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 및 관련 전문가(간호학 이외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등으로 5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조사자,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보자(또는 증인 및 참고인)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 기구는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3. 해당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과정
6.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7. 본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 제13조 (본조사 후 연구부정행위 판정)

① 판정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하여 판정을 내린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제14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예비조사 기구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6조 (설치)** 본 학회는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연구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본 학회와 회원학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단,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③ JKAN편집위원장과 ANR편집위원장은 참고인으로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보고 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의 조사와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⑦ 위원장이 연구윤리위반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고, 본 학회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본 규정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
2. 연구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처리
3.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0조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제재)**

①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서면경고
2. 회원자격정지
3. 외부 해당기관 통보

② 제1항의 2호의 회원자격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5년 이하의 제한을 말한다

1. 해당 학회지 논문게재
2. 학회활동 참여
3. 해당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위원회가 정하는 권리'

③ 심의 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과 징계 조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21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연구윤리위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방지)**

① 위원회는 회원들의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산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하고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 홍보한다.

## **제6장 보칙**

**제24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 의편협 기준 및 교육부 지침(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제25조 (세부지침)** 본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제정일 이전의 연구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출판된 논문부터 심의 대상이 된다(윤리위원회 규정의 부칙에서 준용).

### **부칙<개정 2022년 7월 8일>**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7조 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이전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제보사항은 출판 당시 규정에 따른다.